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2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용태·김민전·박충권

박덕흠 • 유용원 • 박준태

이인선 · 조정훈 · 임이자

강선영 • 한기호 • 주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 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 순국선열유족회"로 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순국선열유족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	제1조(목적)
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	
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 광복회, 4 · 19민주혁명회, 4	
·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	
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	
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u>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u>
<u>를</u>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순국선열유족회를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	
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	
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	
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	제3조(회원)
(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	
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순국선열유족회: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 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 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 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 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 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 다.